계약에의한학과운영규정 5-1-11

규정번호 5-1-11
제정일자 2004.12.6
최근개정 2025.3.31
개정차수 10차 개정
관리부서 평생교육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23조의7 규정에 의거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우리대학에 설치하는 계약에 의한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에 의해 설치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라 한다.

제3조(설치과정) ① 계약학과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으로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6.3.1.)

② 계약학과를 설치・운영 또는 폐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폐지예정일 2주 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식에 따라 설치・운영계획 또는 폐지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3.1.)

제4조(계약사항)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우리대학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 학과의 명칭(개정 2016.3.1.)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모집단위별 정원 및 학위 종류(개정 2016.3.1.)
5.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산업체 및 학생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 개정 2017.06.20)
6.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 및 납부기한, 미납 시 조치사항(개정 2016.3.1.)
7. 학기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기간에 관한 사항
9.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과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보호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3.1.)
10.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할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11. 학술정보원(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신설 2016.3.1., 2018.08.27.)
12.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신설 2016.3.1.)

제5조(삭제)

제6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의 편성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는 유사학과의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운영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일부 주문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격 및 선발) ① 입학 선발절차는 학칙과 제 규정에 따르되, 산업체 등으로부터 계약학과 설치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학과운영위원회에서 산업체의 자격 및 당해 계약학과와 산업체의 업무 연관성 등을 심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6.3.1.)

② 계약체결 후 산업체에서 추천한 소속직원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선발한다.(신설 2016.3.1.)

1. 재교육형은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입학일 기준으로 10개월 이상 재직한 자(신설 2016.3.1.)(개정 2018.12.10.)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3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9개월 미만 재직자(신설 2016.3.1.)

③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선발하되 산업체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한다.(신설 2016.3.1.)

④ 산업체 추천서에는 입학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신규 입학의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을 첨부하고, 산업체(사업장)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3.1.)

제8조(모집정원) 계약학과 등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51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학칙 제23조의 9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등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등록) ① 제23조의 9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등록금은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별로 부과하되, 학생과 산업체에 별도로 청구한다.(신설 2016.3.1.)

③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로부터 직접 납부 받아야 하며,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대학에 대납할 수 없다.(신설 2016.3.1.)

④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한다.(신설 2016.3.1.)

제10조(학기 및 수업) ① 계약학과는 학기제로 운영하며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9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2개 학기로 운영한다.(개정 2017.06.20.)

② 1학점 취득은 15시간 이상 수업을 기본으로 한다.

③ 수업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및 계절제수업 등으로 운영한다.

④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년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

하여 편성한다.(신설 2016.3.1.)

⑤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이상의 수업을 전임교원 또는 평생교육본부 전담교원이 담당한다.(신설 2016.3.1., 2018.08.27.,2025.3.31)

⑥ 산업체에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 성취 등을 통보한다.(신설 2016.3.1.)

⑦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설치·운영기간 및 재학생 보호) ①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은 위탁교육생의 전문학사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4학기제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3.1., 2018.12.10.)

② 학칙 제23조의 12 제4항에 따라 구조조정 등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약학과에서 맡으며,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체에 취업하여야 한다.(개정 2014.03.01., 2016.3.1.,2024.7.24)

제12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제13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A·B·C·D·F급의 분류로 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일 때는 낙제로 한다. 다만, F급일 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24.7.24.)

제14조(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의 특례) ①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3.1.)

②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주임교수가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3.1.)

제15조(성적의 취소) 기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16조(휴학) 계약학과의 설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학과 및 과정이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휴학은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그 학과 및 과정이 계속 유지되어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나, 복학시에 해당학과가 계약에 의해 지속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한다.

제17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1. 계약당사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를 퇴직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이 부진한 자
3. 산업체 부담금을 포함하여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못한 자(개정 2016.3.1.)
4. 산업체와의 설치·운영기간 내에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신설 2016.3.1.)

제18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지원조직)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심의·의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3.1.)

② 전임교원 또는 평생교육본부 전담교원 등으로 계약학과 담임을 맡도록 한다.(신설

2016.3.1., 개정 2018.08.27.,2025.3.31)

③ 계약학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당직원을 둔다.(신설 2016.3.1.)

제19조(계약학과 설치·운영 현황 공시) ①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3.1.)

②「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정보공시지침」에 따라 계약학과 관련정보를 공시해야 한다.(신설 2016.3.1.)

제20조(회계 관리) ① 계약학과의 회계는 교비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6.3.1.)

② 산업체 명의의 통장 입출금 내역 또는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산업체 부담금이 당해 산업체가 부담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6.3.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칙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64> <생략>

<65> 계약에의한학과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②, 제10조④, 제13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66> - <102>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학과 운영요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7조 제2항 제1호는 2016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제11조 제2항의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11조제2항, 제13조)

부 칙(직제규정) <2025.3.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8> (생략)

<9> 계약에의한학과운영규정(5-1-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학기 및 수업) ⑤항의 “평생교육원”을 “평생교육본부”로 한다.

제18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및 지원조직) ②항의 “평생교육원”을 “평생교육본부”로 한다.

<10> - <17> (생략)